

-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787
----------	------

제출년월일 : 2023. 9.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안이유

2023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산단관리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민원 접근성이 양호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산업단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2 (관리업무의 위탁)
-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부 고시)」 제4조(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지 제13조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8조(위탁계약 체결)

○ 필요성

- 2023년 하반기 분양예정인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주계약 등 기업지원 업무 및 효율적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전문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관리 위탁 필요
- 업무 전문성 및 민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접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필요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산업단지 행정(민원) 업무

-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및 해지 업무
-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및 등록 업무
- 산업용지·공장 등 임대신고 및 처분 신청·신고
-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관리·운영(법·규정상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녹지시설 등 제외)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 포함) 수립에 관한 업무

-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 입주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및 교육·연수사업
- 입주기업체의 수출 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

-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 산업단지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 산업단지간 연계 활성화 사업
- 산업단지 정비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명 칭 :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 위 치 : 대구 동구 율하동 814-1번지 일원
- 규 모 : 167천㎡(산업시설 59천㎡)
- 조성기간 : 2017년 ~ 2024년('23년말 분양예정)
- 유치업종 : 지식, 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업종

마.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5.12월까지

*검단산단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위·수탁 산단(검단·이시아·금호) 협약 기간과 동기화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

- 수탁기관 : (사)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 김희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백만원)

사업명	구분	예산	사업내용
율하 도시첨단 산업단지 운영	인건비	7	사무종사자(사원) 기본급 일부 지원

*기존 위탁금에 신규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위탁비용 증액(7백만원) 지원

3. 위탁업무 지도·감독사항(관리권자 : 대구광역시장 / 관리기관 : 수탁기관)

○ 관리권자 승인 및 기타사항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 관리공단 재산의 매각 등 사전승인
- 관리공단 이사장 및 전무이사 변경 승인
- 기타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관리공단(관리기관) 보고사항

- 입주기업체의 생산·수출·고용, 입주업체 수, 가동률 등 각종 통계
- 입주계약 체결(변경, 해지 등) 현황
- 기타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등

4. 향후일정

-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고시 : 2023. 12월

5. 기대효과

-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산업활동 지원 활성화
- 관리기관 접근성 향상으로 각종 민원(입주계약, 공장등록, 처분 등) 업무의 신속처리 및 현장중심 산업단지 관리 가능

6.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붙임 1]
- 2023년 제3회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2]
-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붙임 3]
- 관내 위·수탁 산업단지 현황 [붙임 4]

붙임 1

관계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리권자
-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⑨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⑩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 등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와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관료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① 관리업무는 법·영·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협회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공단 또는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하여 신규 지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 기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위탁사무 대상)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경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관리·감독 및 회계감사 결과가 포함된 연간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6.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경우 그 사무의 범위
9.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2 2023년 제3회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 '23년 제3회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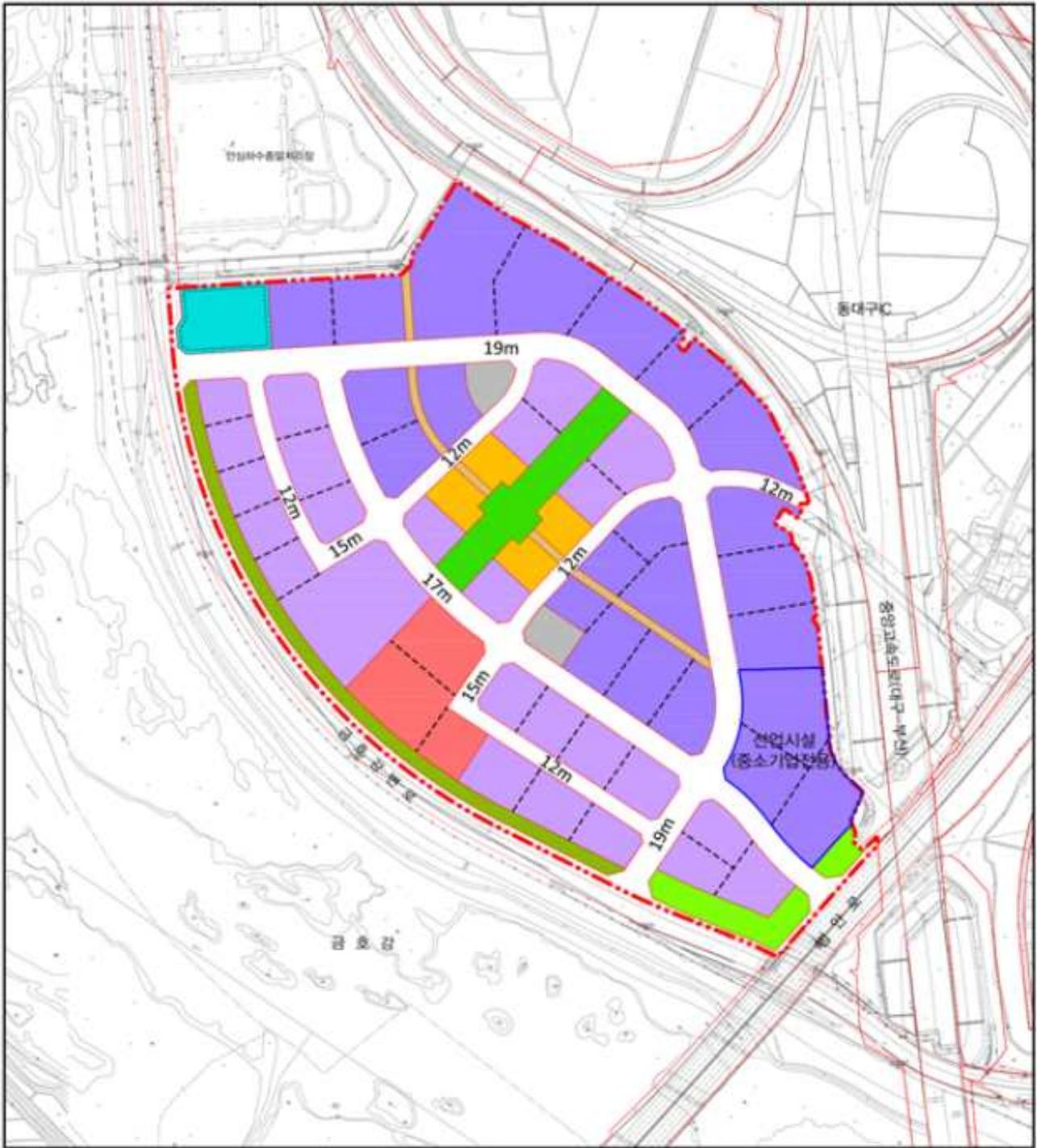
심의안건명 (부서명)	심의내용	의결사항	
		심의결과	심의일자
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 민간위탁 적정성 (산단진흥과)	신규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수의계약)	적정	2023. 8. 18.(금)

붙임 3 울하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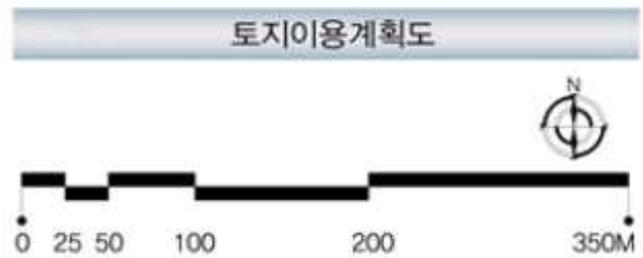
- 위치 : 대구 동구 율하동 814-1번지 일원
- 규모 : 167천㎡(산업시설 59천㎡)
- 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23년말 분양 예정)
- 유치업종 : 지식, 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업종
- 시행자 : LH, 대구도시공사(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사업비 : 1,356억원 정도(LH 35%, 대구도공 65%)
-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167,092	100.0	
산업시설용지	99,370	59.5	
첨단산업용지	59,116	35.4	
복합용지	40,254	24.1	
상업시설용지	7,016	4.2	
지원시설용지	4,211	2.5	
공공시설용지	56,495	33.8	
공원	5,034	3.0	
완충녹지	3,293	2.0	
공공공지	4,901	2.9	
주차장	2,065	1.2	
유수지	3,141	1.9	
도로	36,265	21.7	
보행자도로	1,796	1.1	

○ 토지이용계획도



범 례		첨단산업		공 원
		복합용지		주 차 장
		지원시설용지		녹 지
		상업시설용지		공공공지
		도 로		유 수 지
		보행자전용도로		



붙임 4 관내 산업단지 관리공단 위·수탁 현황

(단위 : 천㎡, 백만원)

산단명	전체면적 (산업용지)	입주 업체수 (23.6월 기준)	'23년 위탁금 예산		비고
			총액	위탁금 내역	
계		9,199	3,935		
성 서	12,620 (7,371)	2,860	1,564	-청사관리 50 -체육시설관리 187 -체육시설 개선 1,037 -셔틀버스 158 -인지사인물 관리 70 -환경정비 2 -출판산업단지 관리 130	관리비 미지원 (자체수익 운영)
달성1차	4,079 (2,518)	342	194	-통근버스 운행 192 -환경정비 2	관리비 미지원 (자체수익 운영)
달성2차	2,705 (1,424)	290	862	-청사 관리운영 114 -통근버스 운행 747	관리비 미지원 (산단공 관리)
검 단	782 (570)	578	291	-관리업무 위탁 289 -환경정비 2	
제3	1,685 (1,271)	2,440	696	-관리업무 위탁 244 -대구지식산업센터 관리운영 450 -환경정비 2	
서대구	2,662 (1,287)	2,689	328	-관리업무 위탁 222 -근로자복지회관 관리운영 104 -환경정비 2	

※ 검단산업단지관리공단 위탁 산업단지 현황

산 단 명	전체면적 (산업용지)	입주업체 (필지) 수	종업원 수	'22년 매출 (억원)
계	3,144 (1,079)	636	9,391	10,566
검 단	782 (570)	578	7,856	7,949
금호워터폴리스	1,186 (340)	분양중	분양중	분양중
이 시 아 폴 리 스	1,176 (169)	58	1,535	2,617